

무배당 건강해지는 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 업 방 법 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건강해지는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건강해지는 연금보험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보험가입금액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더블케어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나. 보험료 납입기간

(1) 기본보험료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다.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라. 보험가입금액 : 기본보험료 X 12 X Min(보험료 납입기간, 10)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 및 가입나이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기본보험료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른다.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가입나이별 최저보험료
5년납	만15세 ~ 57세	max(가입나이+13세, 45세) ~ 70세	20만원
	58세 ~ 60세	(가입나이+10세) ~ 70세	40만원
7년납	만15세 ~ 55세	max(가입나이+15세, 45세) ~ 70세	20만원
	56세 ~ 58세	(가입나이+12세) ~ 70세	40만원
10년납	만15세 ~ 54세	max(가입나이+16세, 45세) ~ 70세	만15세 ~ 24세 : 10만원
			25세 ~ 54세 : 20만원
15년납	만15세 ~ 53세	max(가입나이+17세, 45세) ~ 70세	만15세 ~ 25세 : 10만원
			26세 ~ 53세 : 20만원
20년납	만15세 ~ 49세	max(가입나이+21세, 45세) ~ 70세	10만원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15년 시점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른다.

- (1)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 (3)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추가납입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 200%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경과월수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12 × 200%

다. 보험료 납입한도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총액과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의 합계로 한다. 다만,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나'항에서 정의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를 선납할 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때 선납 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한다.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 미경과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이 선납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할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회사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연금계약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월계약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2회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의 총 인출금액("15. 노후 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의 인출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연금계약 적립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가'항에도 불구하고 인출 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기본보험료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 인출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

에 의한 연금계약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3) 가중치는 0.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6)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일을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4)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함.

(3) 운용자산이익률

-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가'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 이후 10년 이하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0%로 한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에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와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라.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한다.

13.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 나. 회사가 '가'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14. 노후행복자금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노후행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나.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범위 내에서 5% 단위로 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 다.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은 노후행복자금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
- 다만,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한다.

15.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일부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의 총 인출금액("10. 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의 인출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6.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한다.

17.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적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 금액(이하 '대상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행복자금 적립액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연금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하다.

(1)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계약
- ②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③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연금계약 적립액의 인출액 제외)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④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70세 이하인 경우

(2)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 ① 전환 신청 당시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②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라.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을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8. 헬스케어골드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제공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제공한다.
-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진다.
- (3) 본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다.

19. 기타

가. 회사는 상품명칭 및 보험종목의 명칭 앞뒤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은행 등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 포함)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 다.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더블케어연금형”의 연금액 산출에 적용하는 “6대질병”, “4대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고도장해상태”의 발생률은 계약일(가입시점)의 위험률을 적용한다.